

檢, 報告 業務日誌等의 責任을 진다.

以上 公害防止法의 內容에 對해서 概說하였으나 <公害防止法이 가지는 缺陷에 對해서 效果에는 相當히 難點이 많을 것이 豫想되고 있다.

첫째로 이법의 施行만으로 法定의 基本目的인 環境汚染을 防止할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 對해서는 大氣汚染物의 約 60%가 工場, 事業場 以外인 自動車排氣, 住宅煤煙等으로 排出되는 事實과 工場事業場에서 排出되는 廢水量과 거의 同一한 量의 下水가 都市, 農村地域에서 排出된다는 事實로 因해서 이 改正公害防止法 以外에도 河川法, 港灣法, 下水道法 海上法, 塵芥處理法, 汚物清掃法, 都市建築法, 國土開發綜合法, 道路運送車輛法, 工場 申告法 등에서 環境汚染을 防止監視할 수 있게 補充되지 않으면 工場事業場의 施設이 不當한 制限監視를 强要할 可能性이 있다.

둘째로 排出施設을 重點으로 規制하고 그 許容限度를 規定한 것은 妥當하지만 그 限度의 科學的 根據가 曖昧한 것을 指摘할 수 있다. 實際로 이 被害地點과 排出의 許容限度 以下로서 默認된 工場施設인 境遇에도 本法 第2條1項 및 第2項의 生活環境을 阻害하지 않는다고 斷言할 수 있는가는 再檢討의 餘地가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本法과 施設規則間의 矛盾으로서 今後改善되어야 할 條文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公害는 地域의 特殊性에 따라서 그 基準을 달리하여야 할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法15條 및 16條에는 行政長의 汚染의 實態調査를 하여야 할 義務와 國家自治團體의 都市開發, 産業立地의 選定, 造成, 整備等의 施策에 있어서 地理氣象 水利産業分布其他를 事전에 調査하도록 되어 있고 또 第8條項2에는 公害로 因한 國民保健上의 危害와 生活環境의 被害가 部分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急迫하다고

할 때에는 排出施設의 操業時間制限, 停止, 其他 措置를 할 수 있고, 施行規則 別表 3의 排出許容基準의 바項에는 規定된 許容基準以下라고 할지라도 公害惹起 憂慮가 있거나 基準을 超過할지라도 公害發生의 憂慮가 없다고 認定 될 때에는 地方長官이 主務長官의 承認을 얻어 許容基準을 調整할 수 있도록 한 點이다.

그러나 第8條2項의 急迫한 境遇인 施行規則 8條에 該當하는 例가 있을 程度라면 그 以前에 施行規則 別表 3 바項의 適切한 措置가 取해져야 할 것이며 實地는 그 調整은 假想的인 環境基準을 設定하고 그것을 達成하기 위한 排出基準을 行政基準으로 定하는 것이 外國의 常例인 까닭에 오히려 本法에는 地方長官이 地域의 特殊性을 考慮해서 環境基準과 排出基準을 設定할 수 있도록 規定함이 妥當할 것이다.

끝으로 公害防止法 適用과 同時에 汚染行爲로 因한 被害補償을 民法上의 相隣關係에서 解決되어야 할 때가 많다. 이것은 公害防止法이 排出者를 規制할 뿐이며 여기에서 派生된 他人의 損失을 補償하는 規定이 없기 때문이다. 改正公害防止法은 이러한 境遇에 있어서 早速한 處理를 위해서 紛爭調整委員會를 두도록 하여 公正한 調整을 할 수 있는 權限을 委員會에 附與한다.

다만 이 委員會의 調整은 判決과 같이 強制力을 가질 수 없으므로 當事者는 調整結果에 追從與否의 自由가 保障되어 있다.

이와 같이 많은 缺陷과 難點을 內包한 改正公害防止法은 어느 면에서 公害發生에 對한 口實을 提供할 可能性도 있고 理論적으로 不當한 規制도 加해질 憂慮가 있기 때문에 彈性性 있는 運營에 期待할 수 밖에 없다.

筆者 延世大學校 教授

數十億年에 比한다면 數十萬分의 一에 지나지 않으며 人間은 當然히 이 地球上에서 永遠히 살 수 있다고 斷定하기엔 地球上에 너무 生소한 動物인 것이다.

即 人類가 最近爆發的인 增加率을 보인데 바로 問題點이 있는 것이다. 國際聯合會에서 最近發表한 바에 依하면 1970年의 世界 人口는 36億3千萬名으로 되어 있다. 1950年 當時의 26億에 比하면 20年 間에 10億의 人口가 增加했고 이 推勢로 나가면 30年後에는 現在의 倍로 늘고 百年後에는 現在의 約 8倍인 3百億에 肉迫하게 된다.

한편 地球上의 人間에게 食糧을 供給해 주는 源泉은 太陽 에너지다. 即 太陽 에너지가 植物을 成長시키고 植物은 動物이 먹고 動物을 人間이 잡아 먹는 循環을 繼續하고 있는 것으로 그 太陽에너지를 最大限 有効하게 使用하며 얼마나 많은 人間이 地球上에 살 수 있는가를 計算한 結果 이면 計算値로서는 3百乃至 3百5億人이라고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單純히 食糧만의 問題로서 나온 것이지 國際聯合會人間環境會議 事務局長은 地球上에는 百億人이 生活할 수 있는 것이 限界點이며 그 以上일 때에는 文化生活을 할 수 없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제 地球는 人口팽창으로 터질지경이다. 그런데 人間에게 地球는 단하나 뿐이며 달리 變通할 道리가 없다는데 苦惱이 있는 것이다.

× × ×

첫째 人口가 增加하면 自然環境의 問題가 發生한다.

例를 들어 地中海沿岸地域에서 여기 저기 土地가 보이는데 植物學者 말에 依하면 옛날에는 훌륭한 森林이 있었고 草原地였다고 한다. 그것을 로마時代에 森林에 羊떼를 放牧하거나 森林을 불태워 牧草地로 만들어서 羊떼가 풀을 마구 먹어버렸기 때문에 洪水가나면 草木이 없으니가 沙汰가나 남은것은 바위뿐인 결과가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의 森林地帶가 지금은 벌거숭이 岩石地帶가 됐는데 그러나 19世紀까지는 自然破壞는 人間이 自然에 挑戰해서 人間文化가 勝利한 것이라고 오히려 높이 評價했던 것이다.

産業公害防止의 技術對策

方 錫 吾

1. 環境保全과 開發

人類와 地球를 關聯시켜 생각할 때, 人類의 一萬年의 歷史란 單位는 地球의

2. 公害對策의 基本姿勢

1950年以後科學技術의 發達과 더불어 大量消費로 産業發達이 高度化하자 隨伴한 問題가 바로 大氣汚染이며 이는 無計劃했던 都市計劃이나 廢棄物處理로 그 深度를 더해 드디어는 世界的 頭痛거리인 環境汚染 問題로 변진 것이다.

自然은 生活 모든 면에서 影響을 준다 따라서 自然을 保護하고 아름다운 環境을 維持한다는 것은 將來의 物質的 生活뿐 아니라 精神的 面에서도 大端히 重要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狀況下에 我們 이떻게 그 解決策을 모색할 것인가?

具體的 方案으로 科學公害防止技術을 發達시킬 道理밖에 없겠다.

첫째 基本的인 問題로 環境基準設定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 基準은 이디까지나 長期的인 展望에 立脚해야 할 것이며, 一旦定해지면 쉽사리 變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排出規制의 基準을 定해야 한다. 이는 濃度보다도 絕對量을 基準으로 하는 것이 合理的인 일 것이며 企業側의 意慾을 考慮해서 段階的으로 計劃規制를 하는 것이 理想的이겠다.

셋째로 보다 重要한 것은 公害發生源인 企業側의 基本姿勢다.

法規制에 끌려 가지못해 하는 被動的이고 消極的인 態度보다 能動的으로 企業內의 公害專門部署를 두어 專門技術者가 진지하게 달려 붙이 研究하고 施設을 갖추는 態度가 要望된다. 뿐 아니라 慾心으로 一步 더 前進해서 企業側의 積極的인 問題處理方法으로 公害가 아주 없거나 보다 적은 生産프로세스를 個個의 企業에서 採擇해 주었으면 하고 나아가 새로운 生産品을 研究開發해 주었으면 한다. 例를 들이 公害없는 農藥, 公害없는 自動車等이다.

3. 公害對策의 技術問題

그런데 이제 더 具體的으로 技術問題로 파고 들어가 보자.

가. 企業의 公害防止能力

公害에 對한 認識을 前提로해서 公害防止費用負擔의 經濟的 能力과 公害防止設備運營의 技術的 能力으로 區分할수

있다.

따라서 이 兩者를 充分히 檢討한 뒤에 그 能力에 따라 企業의 公害防止對算을 세워야 한다.

나. 公害處理裝置메이카 問題

公害防止裝置메이카—는 단순히 營利를 目的으로 만해서는 안된다.

公害處理設備의 設置에 있어서 隨時로 相談에 應할뿐 아니라 그 性能을 點檢하는 誠意가 있어야 한다.

다. 規制基準의 問題

現在 規制 基準은 納得이 갈 수 있는 根據가 分明치가 않다.

根本的으로 自然을 破壞하지 않는 即 環境保全을 할 수 있는 汚染物質의 限界值에서 規制基準值을 定한다는 것이 가장 重要하며 이 限界值의 究明研究가 緊要하다.

그리고 이 限界值와 現在의 處理技術로 達成할 수 있는 汚染物質의 極小值의 差가 큰 産業廢棄物의 處理法에 對하여 重點的으로 研究해야 한다.

라. 分析法的 問題

現在의 汚染物質의 分析法中에는 分析值에 信任性·再現性에 희박한 것이 있다. 따라서 分析法을 再檢討하기 爲해서 共通試料에 對해 公共機關에서 말하자면 콩쿨과 같은 것을 實施할 必要가 있다.

4. 結 論

이제 70年代는 企業에 있어서 公害解決이라는 커다란 難點을 迎태하고 있다. 이것을 큰 企業이건 작은 企業이건 法的 範疇에든 以上 同一規制對象으로 取扱될 것이다.

또한 이 問題는 法規制以前의 問題로서 人間生活의 環境을 破壞한다고 하는 公害인 만큼 積極的으로 그 防止策에 寄與하는 것이 企業人의 모럴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大企業은 資金이나 技術로나 公害解決이 比較的 無難할지 모르나 中小零細企業에서는 經濟的으로 負擔을 감당할 수 있을가가 問題된다.

따라서 公害의 實態는 다를지 모르나 生産·加工等企業은 大氣汚染·水質汚染·騒音·振動·其他 産業廢棄物等的 많은 公害 實態를 안고 있게 마련인데 根本解決策으로서는 業種內容別로 特定地域에 共同團地를 마련하는 것이 理想的인 아닌가 생각한다.

서울특별시의

公害대책은?

김 호 상

대도시의 자연환경 보존문제는 큰 사회문제가 되지 오래다.

대기오염을 비롯하여 하천오염과 소음진동으로 인해 생활환경을 침해받기 때문이다.

서울의 하늘 밑에 현재 인구 600여만명이 생활하는 대都市는 “과연, 무엇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오염이며 시민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조사 연구하여 그 결과에 의거 시민의 안전생활 환경을 보존키 위해 처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서울특별시 위생시험소(소장 약학박사 박재주)에는 환경측정 및 각종 공해요인 조사 연구를 위한 공해검사과(公害檢査科)를 두고 서울특별시의 대기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1968년 부터 매년 서울의 613km²의 전면적을 광화문을 기점으로 하여 반경 5km, (시내 중심가) 10km, 15km로 나누고 이를 다시 4km²의 면적으로 세분하여 중요지점 25개 지점을 선정하고 대기오염 조사기를 상설해 놓고 있다.

대기오염 조사는 공해검사과 직원에 의하여 국내 최초로 제작 사용되고 있으며 이 기구의 특징은 대기 중의 유황산화물을 측정하는 PbO₂ Candle 과산화(연통)과 강하분진을 포집하는 Deposit Gauge(강하분진 포집기)가 1조로 되어 있어 대기오염도 조사에 능률적이며 효과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 조사 연구팀은 이에 만족치 않고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대기오염도 판정을 위해 Monitarine System(대기오염 자동 감시망)이 조속히 설치되었으면 한다.

(筆者 서울特別市衛生試驗所 公害檢査課長)